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25호

「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1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강릉시 커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커피산업, 커피연계 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기본계획 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커피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커피산업 자문위원회 설치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~11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, 강릉시의회
- 전화번호: 033-640-4051
- 팩스번호: 033-640-4070
- 전자우편(이메일): ps7430@korea.kr

붙임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커피산업”이란 커피(coffee)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, 제조, 가공, 유통, 판매, 소비,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커피연계 산업”이란 커피산업 관련 용품, 기계, 식품, 포장, 커피 부산물 재활용, 교육, 전시,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 관련 사업자”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란 강릉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관할구역에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(이하 “커피산업 등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커피산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사업자 및 커피산업 등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등(이하 “기관·단체

등”이라 한다)은 시의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.

1. 기본목표와 방향
2.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
3. 커피산업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증 사업
4. 커피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홍보
5. 커피산업 등의 친환경 사업
6. 커피산업 등과 문화·관광산업의 연계
7. 커피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
8. 그 밖에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시민, 관계전문가, 사업자,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해당 계획에 각각 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커피산업 등의 육성)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커피의 생산, 제조, 가공 등의 연구·개발
2. 산업단지 및 특화거리 조성 등
3. 교육 훈련시설의 설치,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
4. 커피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
5. 커피산업 등의 국·내외 교류·협력 사업
6. 커피 부산물 활용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
7. 그 밖에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육성·지원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

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등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, 대학 및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필요할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설치)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효율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강릉시 커피산업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커피산업 등과 관련한 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
3. 커피산업 등의 현안에 관한 사항
4.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0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커피산업 등의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커피산업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.

1.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커피산업 등 관련 기관·단체 등 및 직종 종사자

3. 시 커피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커피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.

제11조(위원회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